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- 293호

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문

[제2022-001호]

사 건 명　　현대자동차㈜의 '중고자동차 판매업' 사업개시에 따른 사업조정의 건

신 청 인　　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(회장 임영빈)
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(회장 장남해)

피신청인　　현대자동차㈜(대표이사 장재훈)

권 고 일　　2022. 4. 29.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피신청인에게 '22년 5월 1일부터 '25년 4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.

권 고 사 항

1. 현대자동차㈜는 사업개시를 1년 연기('22.5.1~'23.4.30)한다. 다만, '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입 1만대, 판매 5천대 내에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.

2. 현대자동차㈜의 판매대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.

기간	‘22.5.1~’23.4.30	‘23.5.1~’24.4.30	‘24.5.1~’25.4.30
판매대수	-	2.9%	4.1%

* 판매대수 산출기준 :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(사업자거래(알선이전+매도이전)+당사자거래)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

3. 현대자동차㈜는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중고차의 매입을 요구한 경우에만 매입한다

4. 현대자동차㈜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차량은 경매 의뢰 하되,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자동차㈜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하여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%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2022. 4. 29.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